

[보장내용]

□ 보장(보상)의 종류, 보험금지급사유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 통 약 관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약관 참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지급)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만원
			2~3급	5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특 별 약 관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 사망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과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과절 제외. 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과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과절 포함. 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약관 참조)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약관 참조)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약관 참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300만원</td> </tr> <tr> <td>2~4급</td> <td>150만원</td> </tr> <tr> <td>5급</td> <td>75만원</td> </tr> <tr> <td>6급</td> <td>40만원</td> </tr> <tr> <td>7급</td> <td>20만원</td> </tr> <tr> <td>8~11급</td> <td>10만원</td> </tr> <tr> <td>12~14급</td> <td>5만원</td> </tr> </tbody> </table> <p>(가입금액 300만원 기준)</p>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300만원	2~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300만원																																		
2~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상해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Ⅳ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42일~69일 진단시</td> <td>1천만원</td> <td>1천만원</td> <td>1천만원</td> <td>1천만원</td> <td>1천5백만원</td> <td>2천만원</td> <td>2.5천만원</td> </tr> <tr> <td>70일~139일 진단시</td> <td>2천만원</td> <td>3천만원</td> <td>4천만원</td> <td>5천만원</td> <td>7천만원</td> <td>8천만원</td> <td>9천만원</td> </tr> <tr> <td>140일 이상 진단시</td> <td>3천만원</td> <td>5천만원</td> <td>7천만원</td> <td>1억원</td> <td>1억2천만원</td> <td>1억5천만원</td> <td>2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5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구분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5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3천만원</td> <td colspan="2">5천만원</td> <td colspan="2">7천만원</td> </tr> </tbody> </table>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Ⅱ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구분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주이상~4주미만 진단시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0만원
		4주이상~6주미만 진단시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Ⅱ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정식 재판청구)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Ⅲ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도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1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벌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됨				구분	보상한도
					어린이보 호구역내 교통사고	3천만원
					상기 이외	2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벌금액을 실손 비례보상 ※ 1사고당 벌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됨				5백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 치료비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대물누수50만원,누 수외20만원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물누수50만원,누 수외20만원공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상해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상해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급여)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치아과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의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창상봉합술치료비(1일 1회한,연간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1일 1회한, 연간3회한)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연간30회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입원 중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보험가입금액 (1일당 1회, 연간30회한)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부터 입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정식재판청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